

- 제 정 일 : 1996. 10. 26.
- 1차 개정일 : 1997. 1. 26.
- 2차 개정일 : 1998. 2. 8.
- 3차 개정일 : 1998. 5. 3.
- 4차 개정일 : 1998. 6. 16.
- 5차 개정일 : 2005. 1. 1.
- 6차 개정일 : 2006. 10. 17.
- 7차 개정일 : 2007. 3. 2.
- 8차 개정일 : 2007. 10. 20.
- 9차 개정일 : 2007. 12. 28.
- 10차 개정일 : 2008. 10. 31.
- 11차 개정일 : 2012. 7. 4.
- 12차 개정일 : 2017. 6. 30.
- 13차 개정일 : 2018. 9. 13.
- 14차 개정일 : 2019. 1. 18.

정 권

학교법인 베뢰아아카데미학원

학교법인 베뢰아아카데미학원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인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과 베뢰아 사람들의 정신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에 기초하여 기독교신학과 기독교교육에 관련된 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이 법인은 학교법인 베뢰아아카데미학원(學校法人 베뢰아아카데미學園, 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 (설치학교)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학교를 설치·경영한다.

1. 베뢰아국제대학원대학교(베뢰아國際大學院大學校) <개정 2005. 1. 1>

제4조 (주소) 이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마산로 364에 둔다. <개정 2017.6.30.>

제5조 (정관의 변경) 이 법인의 정관의 변경은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 의 의결을 거쳐 변경하며, 변경 후 14일 이내에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20., 2008.10.31. 2017.6.30.>

제2장 자산과 회계

제1절 자산

제6조(자산의 구분) ① 이 법인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되 기본재산은 교육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 기본재산은 별지 목록의 재산과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및 기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정하는 재산으로 한다.

③ 보통재산은 제2항에서 정하는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6조의1에서 이동 <2017.6.30.>]

제6조의1 삭제<2017.6.30.>

제6조의2(재산출연자의 정관기재) ① 이 법인의 설립당시 그 취지에 공감하고 재산을 출연한 자는 다음과 같다.

성명	생년월일	출연재산내역 (부동산의 경우 소재지포함)	평가기준	평가금액 (천원)	출연의사
김기동	1938.6.25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동 682-2 토지 1,323.8㎡(400.4평)	기준시가	2,317,000	무상기증
김기동	1938.6.25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동 682-2 건물 5,909.71㎡(1,787.6평)	기준시가	2,295,000	무상기증

② 이 법인 설립 이후 출연 또는 기부 당시 수익용기본재산 확보 기준액의 20%이상을 출연 또는 기부한 자는 다음과 같다. <본조신설 2006. 10. 17>

성명	생년월일	출연재산내역 (부동산의 경우 소재지포함)	평가기준	평가금액 (천원)	출연의사
성락침례교회 김기동	1938.6.25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동 665-10 대지 662.9㎡	기준시가	1,113,000	무상기증
성락침례교회 김기동	1938.6.25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동 665-10 건물 2,984.6㎡(지하2층,지상7층)	기준시가	1,160,000	무상기증

제7조 (재산의 관리) ①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를 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과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8조 (경비와 유지방법) 이 법인의 경비는 기본재산에서 나는 과실과 수익사업의 수입과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2절 회계

제9조 (회계의 구분) ① 이 법인의 회계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 한다.

② 법인회계는 일반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당해 학교의 장이 집행하고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는 이사장이 집행한다.

제10조 (예산 외의 채무부담) 수지예산으로써 정한 이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 포기는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1조 (세계잉여금의 처리) 이 법인에 속하는 회계의 매년도 세계잉여금은 차입금의 상환과 익년도에 이월 사용하는 분을 제외하고는 적립하여야 하며, 이 적립금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제12조 (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3절 예산·결산자문위원회

- 제13조 삭 제 <2006. 10. 17.>
- 제14조 삭 제 <2006. 10. 17.>
- 제15조 삭 제 <2006. 10. 17.>
- 제16조 삭 제 <2006. 10. 17.>
- 제17조 삭 제 <2006. 10. 17.>

제3장 기관

제1절 임원

제18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 사 10인 <개정 2008.10.31, 2012.7.4>
2. 감 사 2 인

제19조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최초의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임기의 반으로 한다.

1. 이 사 4 년
2. 감 사 3 년(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개정 2006. 10. 17>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20조(임원의 선임방법) ①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 경우 임원의 성명, 나이, 임기, 현직 및 주요경력 등 인적사항을 학교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17>

② 임기 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자진사퇴의 경우에는 보고사항으로 한다 <조문추가2008.10.31 >

③ 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④ 임원의 선임은 임기만료 2개월 전에 하여야 하며 늦어도 임기개시 1개월 전에 관할청에 취임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20조의1에서 이동 <2017.6.30.>]

제20조의1 삭제

제20조의2(개방이사의 자격) 이 법인의 개방이사는 법인의 설립이념인 기독교 신앙의 교육목적에 적합한 자로 침례를 받은 자이어야 한다. <본조신설 2006.10.17.><개정 2018.9.13.>
<개정 2019.1.18.>

제20조의3(개방이사의 정수) 이 법인의 개방이사의 수는 3명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6.10.17.>

간서명 이사 _____ 이사 _____ 이사 _____ 4

<개정 2019.1.18.>

- 제20조의4(개방이사의 선임)** ① 법인은 개방이사의 선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재직이사의 경우 임기만료 3월전)에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 개방이사 선임 대상자를 추천 요청하여야 한다.
- ② 법인은 개방이사 선임대상자를 추천 요청할 때 정관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함께 제시할 수 있다.
- ③ 법인으로부터 추천 요청을 받은 개방이사추천위원회는 30일 이내에 대상인원의 2배수를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동 기간 내에 추천이 없을 시에는 법인은 관할청에 추천을 요청한다.
- ④ 그 밖에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서 개방이사 추천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규정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6. 10. 17><개정2007.12..28.>

- 제20조의5(개방이사추천위원회)** ① 제20조3항의 개방이사를 추천하기 위하여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이하“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대학평의원회에 둔다.
- ② 추천위원회는 다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법인이사회에서 추천한 자 2인
 2. 세계베뢰아교회연맹에서 추천한 자 3인<개정 2012.7.4.><개정 2018.9.13.>
- ③ 추천위원회의 의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 ④ 삭제 <2007. 12. 28.>

- 제21조 (임원선임의 제한)** ① 이사 정수의 반수 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 ② 이사회에 있어서 각 이사 상호 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6. 10. 17><개정2007. 3. 2>
- ③ 이사 정수의 3분의 1이상은 교육경험이 3년 이상 있는 자라야 한다. <개정 2007. 3. 2.>
- ④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개정 2007. 3. 2>
- ⑤ 삭제 <2006. 10. 17.>
- ⑥ 감사 중 1인은 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자로 한다. <본조신설 2006. 10. 17><개정 2007. 12. 28>
-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본조신설 2006. 10. 17.>
1. 관할청으로부터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자
 2. 사립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 파면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자
 3. 관할청의 요구에 의해 학교의 장에서 해임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자
- ⑧ 제6항의 감사 추천 등에 대하여는 제20조의4(개방이사 추천 관련규정)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7. 3. 2>

제22조 (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등) ① 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선출하여 취임한다. <개정 2018.9.13.>

- ②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 ③ 이사장은 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을 겸하지 못한다.

제23조 (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 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24조 (이사장 직무대행자 지정)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이 결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직무대행자로 지명된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5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를 이사회와 관할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 또는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 또는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26조 (임원의 겸직금지) ① 이사는 감사 또는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학교의 장은 예외로 한다.

② 감사는 이사장·이사 또는 학교법인의 직원(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포함한다)을 겸할 수 없다.

③ 이사장은 다른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장이나 다른 학교법인의 이사장을 겸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6. 10. 17><개정 2007. 10. 20.>

제2절 이사회

제27조 (이사회 구성 및 기능 등) ①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학교법인의 예산·결산·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학교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
7.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8.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8조 (이사회회의 개최 및 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이사 정수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최하지 못한다.

② 이사회회의 의사는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정수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개정 2006.10.17.>

③ 이사회회의 회의는 이사가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의 방식에 의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6.30.>

제29조 (이사회 의결 제척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선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 자신이 법인과 직접 관계되는 사항

제30조(이사회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 직무대행이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합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회의 개최를 요구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30조의1에서 이동 <2017.6.30.>]

제30조의1 삭제 <2017.6.30.>

제30조의2(이사회 회의록의 공개) 이사회는 회의 종결 후 10일 이내에 당해 회의록을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3월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이사회에서 사립학교시행령 제8조 2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서 개정 2017.6.30.>

제31조 (이사회 소집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7일 이내에 회의소집통지를 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반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25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소집권자가 이사회회의 소집을 기피한 경우는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7.3.2.>

제4장 수익사업

제32조 (수익사업의 종류) 이 법인이 설치하여 유지·경영하는 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건물임대업

2. 수익증권투자

제33조 (수익사업의 명칭) 제32조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성락빌딩'을 경영한다.

제34조 (수익사업체의 주소) '성락빌딩'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마산로 364에 둔다.
<개정 2017.6.30.>

제35조 (관리인) ① 제33조에 규정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인의 임용·복무·보수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

제5장 해산

제36조 (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2008.10.31. >

제37조 (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 재산은 합병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할청에 대한 청산 종결의 신고가 종료된 후 국고 또는 다른 기독교계 학교법인에게 귀속된다. <개정2008.10.31.>

제38조 (청산인) 이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은 해산 당시의 이사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2008.10.31.>

제6장 교직원

제1절 교원

제1관 임명

제39조 (임용) ① 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되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 중에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06. 10. 17.><개정 2007. 10. 20><개정 2018.9.13.><개정 2019.1.18.>

② 학교의 장 이외의 교원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다만, 신규임용의 경우에는 첫째 1년을 임용기간으로 하고 임용기간 단위는 다음과 같다.

1. 교 수 정년까지의 기간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2. 부 교 수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3. 조 교 수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4. <삭제 2012.7.4.>
5. 조 교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개정 2006. 10. 17.>
- ③ 대학교육기관의 부총장 등의 보직은 학교의 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한다.
- ④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권자가 교원을 임면하였을 때에는 임면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9조의2 (임명의 제한) 이 법인의 이사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는 당해 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에 임명될 수 없다. 다만, 이사장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받은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배우자
2.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본조신설 2007. 10. 20.>

제40조 (임시교원) ① 교원이 직무를 이탈하여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할 때에는 그 기간 중 당해 교원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임시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 임시교원은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퇴직한다.

제2관 신분보장

제41조 (휴직의 사유)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11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제7호 및 제7호의2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단서 개정 2017.6.30.>

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할 때(불임·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17.6.30.>
2.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 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개정 2017.6.30.>
3.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
4.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5.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 또는 연수하게 된 때 <개정 2017.6.30.>
6.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국가기관, 재외교육기관(「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재외교육기관을 말한다)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민간단체(세계베뢰아교회연맹)에 임시로 고용될 때 <개정 2017.6.30.><개정 2018.9.13.>
7.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개정 2017.6.30.>
- 7의2. 만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제7호에 따른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아동은 제외한다)을 입양(入養)하는 경우 <본호 신설 2017.6.30.>
8. 관할청이 지정하는 국내의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개정 2017.6.30.>
9. 사고 또는 질병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본호 신설 2017.6.30.>

10. 배우자가 국외근무를 하게 되거나 제5호에 해당하게 된 때 <본호 신설 2017.6.30.>
11.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때 <본호 신설 2017.6.30.>
12.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1조에 따라 계산한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교원이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연구 등을 하게 된 때 <본호 신설 2017.6.30.>

제42조 (휴직의 기간) 교원의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제41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로 한다.
2. 제41조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3. 제41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월로 한다.
4. 제41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5. 제41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고용기간으로 한다.
6. 제41조 제7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하되 분할하여 휴직할 수 있다. <개정 2017.6.30.>
- 6의2. 제41조 제7호의2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입양자녀 1명에 대하여 6개월 이내로 한다. <본호 신설 2017.6.30.>
7. 제41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7.6.30.>
8. 제41조 제9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본호 신설 2017.6.30.>
9. 제41조 제10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3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총 휴직기간은 배우자의 해외근무, 해외유학·연구 또는 연수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본호 신설 2017.6.30.>
10. 제41조 제1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그 전임기간으로 한다. <본호 신설 2017.6.30.>
11. 제41조 제12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1회에 한한다. <본호 신설 2017.6.30.>

제43조 (휴직교원의 신분) ① 휴직 중의 교원은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 ② 휴직기간 중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 ③ 제41조 제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직기간이 만료된 교원이 30일 이내에 복귀를 신고 한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

제44조 (휴직교원의 처우) ① 제41조 제1호 및 제5호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그 휴직기간 중 봉급의 반액을 지급한다. 다만, 결핵성 질환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 중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 ② 제41조 제2호 내지 제4호와 제6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45조(직위해제)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9.13.>

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2.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자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본호 신설 2018.9.13>

4. 금품비위, 성범죄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사람으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본호 신설 2017.6.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8.9.13.>

③임용권자는 제1항제1호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자에 대하여 3월 이내의 기간대기를 명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임용권자는 능력회복이나 태도개선을 위한 연수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9.13.>

⑤제1항제1호와 제2호·제3호 또는 제4호의 직위해제 사유가 함께 있을 때에는 제2호·제3호 또는 제4호를 사유로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9.13.>

⑥ <삭제 2018.9.13.>

⑦ <삭제 2018.9.13.>

⑧ <삭제 2012.9.13.>

제45조의2 (면직) ①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임용권자는 이를 면직시킬 수 있다.

1.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2.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3. 정부를 파괴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한 때
4. 정치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또는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 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선동한 때
5.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한 때

②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사유에 의하여 면직시키는 경우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7.6.30.]

제46조 (보수) 교원의 보수는 자격과 경력 및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47조 (의사에 반한 휴직면직 등의 금지) ① 교원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사립학교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부당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학급·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교원은 권고에 의하여 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③ 교원을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여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제47조의2 (의원면직의 제한) ① 임용권자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그 비위 정도가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 따른 파면·해임·강등·정직에 준하는 정도의 징계(이하 “중징계”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그 비위 정도가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 따른 파면·해임·강등·정직에 준하는 정도의 징계(이하 “중징계”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2. 제58조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 중인 때
 3. 감사원·검찰·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관할청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감사 또는 조사 중인 때
- ② 임용권자는 교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교원이 제1항에 따른 의원면직의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감사·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17.6.30.]

제48조 (명예퇴직수당) 이 대학에 20년 이상 근속한 교원이 정년 전에 퇴직을 원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명예퇴직을 허가할 수 있다. 명예퇴직의 대상, 범위 및 수당 지급액, 지급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49조 (후임자 보충발령의 유예) 교원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근무성적 불량으로 면직되었을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의 발령을 하지 못한다.

제3관 교원인사위원회

제50조 (교원인사위원회 설치)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당해 학교의 교원인사위원회(이하“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1조 (인사위원회의 기능)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학교육기관의 장이 교수·부교수·조교수·조교를 임면 또는 임면 재청하고자 할 때의 임면 또는 임면재청 동의에 관한 사항<개정2012.7.4>
 2. 대학교육기관의 장이 부총장을 보하고자 할 때에 그 보직 동의에 관한 사항
 3.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요하거나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인사위원회가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명의 동의를 함에 있어서 전 임용기간 중의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연구실적 및 전문영역의 학회 활동
 2. 학생의 교수·연구 및 생활지도에 대한 능력과 실적
 3. 교육관계법령의 준수 및 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제52조 (인사위원회 조직) ① 인사위원회는 학교별로 학교의 장이 임명하는 10인 이내의 교원으로 조직한다.

② 인사위원회의 임기는 1년 이내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제53조 (인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직무) ①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학교육기관의 경우에는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③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4조 (인사위원회의 회의소집 등) ①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학교의 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5조 (회의록 작성) ① 인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당해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2인 이상이 서명·날인한다.

제56조 (인사위원회의 간사 등) ① 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② 간사와 서기는 당해 학교의 교직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임명한다.

제57조 (운영세칙)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인사위원회 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

제2절 교원징계위원회

제58조 (징계의 사유 및 종류) ①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 하는 때에는 임면권자는 충분한 조사를 한 후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사립학교법 및 기타 교육관계법령에 위반하여 교원의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때

<개정 2018.9.13.>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②징계는 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으로 한다.

③정직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④감봉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⑤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제목개정 2017.6.30.] [전문개정 2017.6.30.]

제58조의2 (교원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조직) ①교원징계위원회는 5인의 위원으로 조직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다만, 법인의 이사인 위원의 수가 위원의 2분의1을 초과할 수 없다.

1. 교원 또는 법인 이사: 4인

2.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이 법인에 속하지 아니한 자로, 이사장의 추천을 받은 1인 (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

가.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다른 대학에서 법학, 행정학 또는 교육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다.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라. 그 밖에 교육이나 교육행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교원징계위원회 외부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교원징계위원회 외부위원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의결로 해당 위원

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69조의2에 따른 비밀누설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본조신설 2017.6.30.]

제59조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 선출 및 직무) ①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 ②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 ③ 교원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0조 (징계의결의 기한) 교원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 범위 안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61조 (제척사유)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은 그 자신에 관한 징계사건을 심리하거나 피징계자와 친족관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62조 (위원의 기피 등) ① 징계대상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③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로 교원징계위원회의 출석위원이 제척위원의 3분의 2에 미달되어 징계사건을 심리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수가 제척위원수의 3분의 2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위원의 임명권자에게 임시위원의 임명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63조 (징계의결 요구사항 통지) 교원의 임명권자가 교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의결 요구와 동시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64조 (진상조사 및 의견의 개진)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진상을 조사하여야 하며, 징계의결을 행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2회 이상 서면으로 소환하여도 불응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 ② 교원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7.6.30.>

제65조 (징계의결) ① 징계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하여야 한다.

②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하고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주문과 사유를 기록한 징계의 결서를 작성하고 이를 임명권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③ 임명권자가 제2항의 통고를 받은 때에는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의결 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임명권자가 법인일 때에는 징계 처분권을 이사장에게 위임한다.

④ 징계처분권자는 징계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결정서를 당해 교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 교원징계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65조의2 (감사원 조사와의 관계 등) ① 감사원에서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조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②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6.30.]

제66조 (징계의결시의 정상참작 등)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대상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선의정, 징계요구의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67조 (징계사유의 시효) ① 교원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교육공무원법」 제52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제68조 (교원징계위원회의 간사 등) ① 교원징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② 간사와 서기는 교원징계위원회가 설치된 당해 기관 소속직원 중에서 그 임명권자가 임명 한다.

제69조 (운영세칙) 교원징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9조의2 (비밀누설의 금지) 교원징계위원회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2017.6.30.]

제3절 사무직원

제70조 (자격)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직원(기능직 및 고용원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일반직원”이라 한다)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7. 이 법인과 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와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② 일반직원의 신규임용에 있어서는 학력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기술직 및 기능직은 임용될 직종에 관한 자격증·면허증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로 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인사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임용할 수 있다.
- ③ 재직 중인 일반직원이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제71조 (임용) ① 일반직원의 신규임용·승진·승급·전직·전보·강임·휴직·직위해제·복직·면직·해임 및 파면(이하 “임용”이라 한다)은 임용권자가 공개채용·전형 또는 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에 있어서 그 시험과목·방법·절차 등에 관하여는 따로 인사규칙으로 정한다.

③ 일반직원은 이사장이 임용하되, 학교 소속 일반 직원은 당해 학교의 장의 재청이 있어야 한다.

제72조 (복무) 일반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73조 (보수) 일반직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생계비 및 민간인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직무의 난이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적당하도록 직급 및 근무기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인사규칙으로 정한다.

제74조 (신분보장) 일반직원의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 1. 일반직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한다.
- 2. 일반직원으로서 정년에 달한 자는 당해 학기 최종일에 퇴직한다.

제75조 (징계 및 재심청구) ① 일반직원의 징계 및 재심청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일반직원 징계위원회 및 재심위원회는 법인에 따로 두어야 한다.

② 일반직원의 재심 청구를 위하여 법인에 일반직원 재심위원회를 두되,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7장 직제

제1절 법인

제76조 (법인사무조직) ① 이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법인사무처를 두며, 처장은 부참여로 보한다.

② 법인사무처의 분장 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2절 대학

제77조 (총장 등) ① 대학원대학교에 총장을 둔다.

② 총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교직원을 지휘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학교를 대표한다.

③ 학교에 부총장을 둘 수 있으며 교수, 부교수, 조교수로 겸보한다.

④ 부총장은 총장을 보좌하며 총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총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78조(하부조직) ① 대학원대학교에 교무처, 학생처, 사무처를 둔다. 필요할 경우에 기획실을 둘 수 있다.

② 사무처장은 부참여 이상으로 보하고 제처장은 조교수 이상으로 보한다.<개정2012.7.4>

③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78조의1에서 이동 <2017.6.30.>]

제78조의1 삭제 <2017.6.30.>

제78조의2(대학평의원회의 설치) 대학에는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평의원회를 설치한다. <본조신설 2006. 10. 17.>

제78조의3(평의원회의 구성) ① 평의원회는 교원, 직원 및 학생을 대표할 수 있는 자 그리고 동문 및 대학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위촉하는 11명의 평의원으로 구성하며 각 구성단위의 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원 3명

2. 직원 3명

3. 학생 1명

4. 동문 2명

5.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2명

② 평의원회 구성에 있어서 제1항의 각 단위 중 어느 한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의 수가 평의원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6. 10. 17>

제78조의4(교내 평의원의 위촉) 각 구성단위별 협의체 대표자간 협의에 의해 추천된 자를 위촉한다. <본조신설 2006. 10. 17.>

제78조의5(평의원회 의장 등) ① 평의원회에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둔다.

② 의장과 부의장은 평의원회에서 호선하되 그 임기는 평의원 임기와 같다.

③ 의장은 평의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하고,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 유고시 이

를 대리한다. <본조신설 2006. 10. 17.>

제78조의6(평의원의 임기) ①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제78조3항3호의 규정에 의한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 보궐 평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6. 10. 17.>

제78조의7(평의원회의 기능) 평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3호 내지 4호의 경우 자문에 한한다.<개정2012.7.4>

1. 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3. 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4.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대학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신설 2017.6.30.>
6.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신설 2017.6.30.>
7. 기타 학교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본조신설 2006. 10. 17.><개정 2007. 10. 20>

제78조의8(운영규정) 평의원회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6. 10. 17.>

제79조 (부속시설) ① 대학원대학교에는 필요한 부속시설을 둘 수 있다.

② 부속시설에 각각 장을 두며 부속시설의 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겸보한다. 단, 부속시설의 장은 부속시설의 특성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교원이외의 전문인으로 보할 수 있으며 도서관장은 일반직 정사서로 보할 수 있다.<개정2012.7.4>

③ 부속시설의 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시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부속시설에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으며 부서장은 일반직 또는 교원으로 보하되 그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80조 (도서관) ① 도서관에 수서 및 열람 담당자는 사서자격증을 소지한 일반직 또는 교원으로 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3절 정원

제81조 (정원) 법인 및 학교에 두는 일반직원의 정원은 각각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제8장 보칙

제82조 (공고) 이 법인이 법령과 정관 및 기타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일간신문에 공고한다. <개정 2017.6.30.>

제83조 (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제84조 (설립당초의 임원) 이 법인의 설립당초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직위	성명	생년월일	임기	주 소
1	이사장	강 순	4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3동 355-184
2	이 사	강영선	4년	서울특별시 종로구 부암동 318-5
3	//	김기동	4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3동 355-184
4	//	김영명	4년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창동 329-2 럭키펡창빌라 2동 301호
5	//	김응섭	2년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5동 560번지 신도림 현대APT 102-2002
6	//	김종보	2년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A 608-606호
7	//	오순근	2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355-184
1	감 사	박 영	2년	서울시 양천구 신정6동 목동신시가지APT1328-1501
2	//	정경화	1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하광교동 산 78-1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1996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1998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1998년 5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1998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6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② (감사의 임기에 대한 경과규정) 이 정관 시행당시 재임 중인 감사는 제19조1항 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감사의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07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07년10월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07년12월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08년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2년7월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2항, 제51조1항, 제78-1조2항, 제79조2항은 2012년7월22일부터 시행한다
2012년7월22일현재 전임강사는 조교수로하고 전임강사경력은 조교수의 경력으로 인정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7년6월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8년9월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9년1월18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1>

교육용기본재산 목록

(단위 : 백만원)

순	재산의 종류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m ²)	평가액 (숫자)	현소유자
1	토지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동	665-10	대지	662.90 (200.53평)	1,113	학교법인 베뢰아 아카데미 학원
2	건물	"	"	건물	2,984.60 (902.84평)	1,160	학교법인 베뢰아 아카데미 학원
3	예금	국민은행 신길서지점 외 2건	.	.	.	203	학교법인 베뢰아 아카데미 학원
계		3건	.	.	.	2,476	.

<별지 2>

수익용기본재산 목록

(단위 : 백만원)

순	재산의 종류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m ²)	평가액 (숫자)	현소유자
1	토지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동	682-2	대지	1,323.8 (400.4평)	2,317	학교법인 베뢰아 아카데미 학원
2	건물	"	"	건물	5,909.71 (1,787.6평)	2,295	학교법인 베뢰아 아카데미 학원
계		2건	.	.	.	4,612	.

<표1>

법인 일반직원 정원

구 분	인 원	비 고
총 계	3	.
일 반 직 계	3	.
2급 (참 여)	.	.
3급 (부 참 여)	1	사무처장
4급 (참 사)	.	.
5급 (부 참 사)	.	.
6급 (주 사)	.	.
7급 (부 주 사)	.	.
8급 (서 기)	1	.
9급 (부 서 기)	1	.
기 능 직 계	.	.
9 급 등 계	.	.
경 비 원	.	.
전 기 장	.	.
기 계 장	.	.

<표2>

학교 일반직원 정원

구 분	인 원	비 고
총 계	11	.
일 반 직 계	6	.
2급 (참 여)	.	.
3급 (부 참 여)	1	법인 사무처장과 겸직
4급 (참 사)	.	.
5급 (부 참 사)	.	.
6급 (주 사)	.	.
7급 (주 사 보)	.	.
8급 (서 기)	2	.
9급 (서 기 보)	3	.
기 술 직 계	2	.
2급 (참 여)	.	.
3급 (부 참 여)	.	.
4급 (참 사)	.	.
5급 (부 참 사)	.	.
6급 (주 사)	.	.
7급 (주 사 보)	.	.
8급 (서 기)	1	.
9급 (서 기 보)	1	.
기 능 직 계	3	.
9 등 급 계	3	.
경 비 원	1	.
전 기 기 사 보	1	.
기 계 장	1	.